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2. 25.(월) /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	기술기준과	담당자	·과장 안정훈, 사무관 강성호, 주무관 황인협 ·☎ (044)201-3564, 3565
보 도 일 시		2019년 2월 25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25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스마트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턴키 발주 가능

「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」 개정 고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(턴키),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「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」을 개정하여 25일 고시하였다.
 - 지금까지는 장대터널(3km 이상), 특수교량, 대형건축물(연면적 3만㎡ 이상), 등의 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하였으나,
 - 스마트 건설기술*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.
 - * BIM기반 스마트설계(지형·지반 모델링 자동화),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(관제), ICT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, IoT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, 드론·로봇 시설물 진단,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(시설물 정보통합, AI기반 최적 유지관리)
-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 -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‘스마트 건설공사’로 정의 하였다.
 -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다.

- 또한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 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.
- 이밖에 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(훈령)」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대형 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 중에 있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이 활성화 되어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강성호 사무관(☎ 044-201-35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